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198(학성동, 지하1층)
[별지 제33호서식]



공증인 박우순 사무소

(전화) 033-744-7600
(팩스) 033-746-8811

등부 2024년 제 415 호

인 증 서

위 사본은
본 사무소에서
서류임을 증명함.
공증인 박 우 순



제10차 정기대의원 총회 (통합 제22차 총회) 의사록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2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1. 회의명칭 :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
2. 소집통지 : 2024년 3월 5일(화)
3.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 18시 30분
4.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4층 무위당기념관
5. 정 족 수 : 대의원 정수 110명 中 과반(56명 이상)인 59명 참석(최종 60명)
으로 개회
6. 의장성명 : 이사장 이광희
7. 식 순 : 가. 제1부 기념식
나. 제2부 대의원 총회 본회의
8. 부의안건



제1호 의안 2023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안

제3호 의안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연대·협력 비전 결의 중단의 건

제4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제5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2023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제9호 의안 기타 안건

9. 총회경과 및 의안심의 내용

가. 제1부 기념식



1) 개회선언

- 신승훈 전무(이하 사회자)가 18시 45분에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2차) 기념식 개회를 알리다.

2) 인사말

- 이광희 이사장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안건 순서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며 인사말을 전하다.

3) 내빈소개 및 축사

- 내빈소개로 원주밝은진협 이도식 이사장, 청용호 상임이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우세옥 상임이사,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변기영 상무, 원주생협 이현주 이사장을 소개하고 인사말 및 축사는 생략하다.
-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 공증을 위하여 박우준 변호사가 참석하여 인사하다.

나. 제2부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2차 대의원총회) 본회의

1) 성원확인 및 보고

- 이광희 이사장(이하 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하고 성원 보고를 요청하여 신승훈 전무가 대의원 110명 중에서 59명(최종 60명)이 참석(과반수는 56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받고 의장이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2차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

- 의장이 의사록 서기 1명과 기명날인인 3인을 선임하고자 하며 참석 대의원 가운데 자발적으로 역할을 맡아주실 분이 있는지 물었으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장의 추천에 의해 서기는 신승훈 전무가 김선기, 장동성, 천혜란 대의원이 의사록 기명날인인으로 추천되어 이에 의장이 동의를 묻자 참석 대의원 모두 박수로 찬성하여 의장이 서기로 신승훈 전무, 김선기, 장동성, 천혜란 대의원이 기명날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하다.

4)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 의장의 요청에 따라 신승훈 전무가 총회 자료집 10쪽 ~ 17쪽의 전차회의록을 안내하고, 의장이 이에 대한 참석대의원 의견을 묻자 참석대의원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5) 상정 부의안건 심의

- 의장이 제1호 의안부터 제9호 의안 순서대로 심의할 것을 제안하고, 부의안건을 의장의 제안대로 심의할 것을 참석 대의원에게 물어보다.
참석 대의원 모두 동의하여 심의에 들어차다.



○ 제1호 의안 - 2023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의 요청으로 2024년 2월 6일에 박찬현, 정연우 감사에 의해 실시된 조합의 종합감사 의견을 박찬현 감사가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다. 의장이 자료집 19~21쪽 참조할 것을 주문하다.
- 의장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자,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의장이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해도 좋은지 묻고 이에 전원 동의, 전원 재청으로 제1호 의안인 2023년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 제2호 의안 -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 안

-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자료집(22~85쪽)의 2023년 조합 활동 총평 및 결산 요약 등을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 내용과 잉여금 처리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전원 동의, 전원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3호 의안 -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연대협력 비전 결의 중단의 건

- 의장이 박준영 부이사장에게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연대협력 비전 결의 중단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줄 것을 주문하다.
- 박준영 부이사장이 자료집 86쪽의 의결 주문 사항을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김유미 대의원이 연대 협력 중단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고, 권윤혜 대의원이 상황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다. 의장이 권윤혜 대의원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김유미 대의원이 의장의 발언에 대한 재답변을 하다. 의장이 김유미 대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김선기, 김은주, 정민숙, 권윤혜, 차숙현, 원유일, 도수연, 안진구, 구경모 대의원이 발언을 한다.
- 의장이 표결할 것은 주문하고 진행하다.
- 찬성 46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4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제4호 의안 진행을 위하여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고 백송희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석에 착석하다.
- 제4호 의안 임원 선출을 위하여 백송희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의장)이 인사를 하다.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성희 조합원, 신옥경 조합원이 수고하였음을 보고하다.
- 24년 3월 2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박준영, 최효심, 이광희, 이창호, 서연남, 김종희, 김선기, 천혜란, 변재수 9명과 감사 박찬현, 정연우 2명이 있음을 알리고 새로운 임원 선출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관 제3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에 의거하고, 선거관리규정 18, 20조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11일(월)까지 임원선거공고를 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후보자가 등록이 되어 공고하였음을 보고하다.

1) 이사 후보(가나다순) - 총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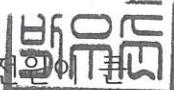
- ① 김선기(조합원 번호 100162) : 중임, [Redacted]
② 김태성(조합원 번호 220061) : 취임(3월 25일), [Redacted]
③ 박준영(조합원 번호 30137) : 중임, [Redacted]
④ 신승훈(조합원 번호 140113) : 취임(3월 25일), [Redacted]
⑤ 서연남(조합원 번호 160001) : 중임, [Redacted]
⑥ 이광희(조합원 번호 100188) : 중임, [Redacted]
[Redacted]
⑦ 이윤승(조합원 번호 220058) : 취임(3월 25일), [Redacted]
⑧ 이창호(조합원 번호 170028) : 중임, [Redacted]
⑨ 염은경(조합원 번호 190062) : 취임(3월 25일), [Redacted]
⑩ 정연우(조합원 번호 180005) : 취임(3월 25일), [Redacted]
⑪ 천혜란(조합원 번호 190025) : 중임, [Redacted]
⑫ 최효심(조합원 번호 30071) : 중임, [Redacted]      

2) 감사 후보(가나다순) - 총 2명.

- ① 김달현(조합원 번호 220060) : 취임(3월 25일), [Redacted]
② 장동성(조합원 번호 210003) : 취임(3월 25일), [Redacted] 

- 의장이 임원 후보자를 호명하고 앞으로 나온 임원 후보자가 간단히 임원입후보에 대하여 포부를 설명하고 인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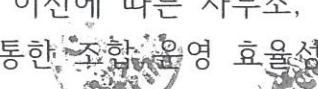
- 의장이 지금 앞에 나온 12명의 이사 후보들과 2명의 감사 후보들은 앞으로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이끌며 봉사하실 분들임을 소개하고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1항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선거관리규정 제18조 3항에 의거해 임원후보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한 방법대로 할 수 있기에 대의원들에게 큰 박수로 임원 후보 선출 의향을 묻고 대의원 모두 큰 박수로 동의하여 임원을 선출하다.

- 의장이 선출된 이사들에게 이사장 후보를 호선하여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사들이 모여 호선하여 이광희 이사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다. 의장이 이사장 후보로 추가 추천이 있는지를 묻자, 대의원들이 없다고 하자 의장이 이 광희 이사장 후보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다. 대의원 전원이 이광희 이사장 후보를 재차 큰 박수로 승인하다.
- 추가로 이사들이 박준영 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호선하여, 대의원  박수로 재차 승인하다.
- 의장이 임원 선출과 이사장 선출이 되었기에 대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새로 선출된 이광희 이사장에게 의장을 넘기다.

○ 제5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 새로 선출된 이광희 이사장이 의장석에 착석하여 의장으로서 인사하고 다시 총회 회의를 진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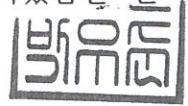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조합 이전에 따른 사무소, 의료기관 소재지 등 변경, 대의원 자격 및 임기  통한 조합운영 효율성,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맞는 규약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필요 등에 대해(자료집 89쪽~94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 동의, 전원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6호 의안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조세훈 대의원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제6호, 제7호, 제8호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들에게 의견을 묻자 전원 동의, 재청하여 이를 수용하고 제6호, 제7호, 제8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 신승훈 전무가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자료집 97쪽~133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정민숙 대의원이 방문구강사업을 제안하다.
- 의장이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자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전원 동의, 전원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7호 의안 -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 의장이 2024년 신규 차입금 최고 한도액(안)을 20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 대의원의 의견을 묻자 전원 동의, 전원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8호 의안 - 2023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2023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2023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변동(자료집 136~137쪽)에 따른 명단(탈퇴, 제명, 양도)과 출자좌수 및 출자총액을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전원 동의, 전원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1. 출자좌수 : 29,337좌
2. 출자총액 : 293,370,374원

○ 제9호 의안 - 기타 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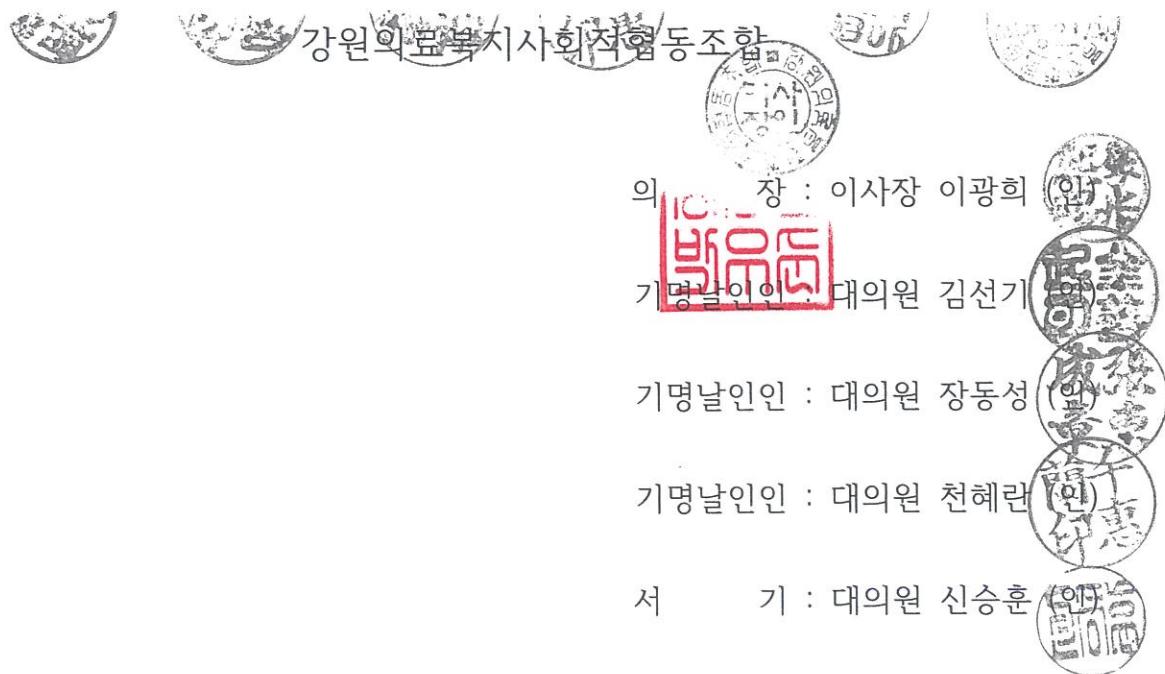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안이 있으면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다.

- 의장이 기타 의안은 없는 것으로 선포하다.
- 폐회선언 전 의장이 마지막으로 공지할 사항이 있는지 묻다.
- 권누리 대의원이 추후 임원들이 연대협력 중단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는 의견을 말하다.
- 횡성땅 기부자 조합원이 횡성땅과 관련 발언을 하다.
- 의장이 더 이상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상의 부의 안건을 모두 승인 후, 제10차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2차) 폐회 시간은 20:25분임.
- 의장이 총회에 참석해 준 대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다.

7) 폐회선언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 총회에서 기명날인 인으로 선출된 4명(서기 포함)의 대의원이 기명날인 또는 기명하기로 하다.

2024년 3월 21일



신·구 조문 대비표

(2024.03.21. 개정)

- 정관 변경 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중앙동)번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p> <p>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p> <p>제4조2(의료기관의 소재지) ①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중앙동)번지에 둔다.</p> <p>②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주치의의원은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p>	<p>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p> <p>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p> <p>제4조2(의료기관의 소재지) ①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에 둔다.</p> <p>②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주치의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p>	도 명칭 변경 및 주소지 이전, 추가에 따른 개정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문구 수정)
<p>제25조(대의원총회)</p> <p>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 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대의원의 자격은 조합원 중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인 조합원으로 한다.</p> <p>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25조(대의원총회)</p> <p>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 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대의원의 자격은 조합원 중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인 조합원으로 한다.</p> <p>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대의원 자격 및 임기 변경을 통한 조합 운영 효율성

<p>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u>임원이</u> 될 수 없다.</p> <p>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u>임원은</u> 당연히 퇴직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u>임원이</u>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p>	<p>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u>임원이나</u> <u>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u> 될 수 없다.</p> <p>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u>임원이나</u> <u>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u> 당연히 퇴직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u>임원이나</u> <u>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u>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p>	<p>협동조합기본 법 개정 (문구 수정)</p> <p></p>
---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198(학성동, 자하1층)
[별지 제37의2호서식]

공증인 박우순 사무소

(전화) 033-744-7600
(팩스) 033-746-8811

등부 2024년

제 415호

인 증

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의

2024년 03월 21일자 제 10차 정기대의원총회 -----

의사록에 기재된 의장 이사장 이광희, 대의원 김선기, 동 장동성, 동 천혜란들의 대리인

겸 대의원 신승훈에 대하여 -----



본 공증인은 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검사 내용과 아래 기재자료에 의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

함을 확인하였다. -----

2024년 03월 22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 박우순 사무소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100(학성동, 자하1층)

공증인

115우수기록부
법률사무소
박우순 사무소
인증부

아

래

1. 대의원참석명부 ----- 6. 인감증명서 -----

2. 범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7. 확인서 -----

3. 정관 ----- 8. 진술서 -----

4. 운전면허증 ----- 9. 공고문 -----

5. 위임장 -----